



시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.

www.namwon.go.kr

제47호 2023. 10. 13(금)

| | |
|--------|-------|
| 선 람 | 기관의 장 |
| | |

| |
|------------|
| 공 고 |
|------------|

- 남원시 공고 제2023-2020호 남원시 읍·면·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(안) 입법예고-----1
- 남원시 공고 제2023-2021호 남원시 라·통·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입법예고-----8
- 남원시 공고 제2023-2025호 남원시 랩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-----20

| | | | | | | | | | | |
|--------|--|--|--|--|--|--|--|--|--|--|
| 회 람 | | | | | | | | | | |
|--------|--|--|--|--|--|--|--|--|--|--|

남원시 공고 제2023 - 2020호

「남원시 읍·면·동·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10월 12일

남 원 시 장

**남원시 읍·면·동·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(안)
입법예고****1. 개정이유**

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따른 법정 행정구역상 관할구역에 마을을 추가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편익을 증진시키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

2. 주요내용

가. 주생면 도산리 내 동산 추가 (안 별표 2)

3. 입법예고기간 : 2023. 10. 12. ~ 2023. 10. 31.(20일간)**4. 의견제출**

가.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원시장(참조 : 행정지원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의견 제출사항

- (1)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)
- (2) 의견 제출자의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
다. 의견 제출할 곳 : (우) 55738 / 전북 남원시 시청로 60, 남원시청 행정지원과

라. 의견 제출 방법 : 서면, 전화(063-620-6069), 팩스(063-620-6704), 이메일(tmdwjd12@korea.kr), 직접방문, 남원시 홈페이지 등

5. 기 타

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행정지원과(☎063-620-6069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6. 남원시 남원시 읍·면·동·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(안) : 붙임

남원시 읍·면·동·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| | |
|----------|--|
| 의안 번호 | |
|----------|--|

제출년월일 : 2023. 10.

제 출 자 : 남 원 시 장

제안설명자 : 행정지원과장

1. 개정이유

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따른 법정 행정구역상 관할구역에 마을을 추가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편익을 증진시키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

2. 주요내용

가. 주생면 도산리 내 동산 추가 (안 별표 2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

나. 그 밖의 사항

1) 입법예고

- 기 간 : 2023. 10. . ~ 2023. 10. .(14일간)

- 결 과 : 해당 없음

2) 비용추계서 : 해당 없음

3) 규제예비심사 : 해당 없음

4) 성별영향분석평가 : 해당 없음

남원시 조례 제 호

남원시 읍·면·동·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남원시 읍·면·동·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2]

남원시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(제2조제2항 관련)

| 읍·면별 | 리 명칭 | 관할구역 |
|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주생면 | 상동리 | 상동, 부동 |
| | 중동리 | 중동 |
| | 지당리 | 대지, 소지, 효동 |
| | 정송리 | 정충, 반송 |
| | 영천리 | 영촌, 유매 |
| | 제천리 | 제천, 서만 |
| | 낙동리 | 낙동 |
| | 내동리 | 내동, 광촌 |
| | 도산리 | 상도, 동산 , 도산 |

※ 관할구역 란의 명칭은 행정리를 말함.

의견제출서

| | | |
|--|---|---|
| 1. 의견제출 목록 | | 남원시 남원시 읍·면·동·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(안)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|
| 2. 제출자 | 성명(명칭) | |
| | 주 소 | |
| 3. 의 견 | | |
| 4. 기 타 | | |
| <p>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(의견제출 및 처리)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0 년 월 일</p> <p>의견서 제출인 주 소 : 성 명 : (서명 또는 인) 전 화 :</p> <p>남원시장 귀하</p> | | |
| 비 고 | 1.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. 2.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. 3.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| |

남원시 공고 제2023 - 2021호

「남원시 리·통·반 설치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10월 12일

남 원 시 장

남원시 리·통·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주민생활권과 행정구역의 일치를 위해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하여,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효율적 행정 추진에 이바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읍·면의 리·반장의 정수 및 리·반의 관할구역 조정 (안 별표 1)

- 주생면 리·반의 변경

· (당초) 주생면 도산리 상도 1·2반

· (변경) 주생면 도산리 상도 1·2반, 동산 1·2반

나. 동의 통·반장의 정수 및 통·반의 관할구역 조정 (안 별표 2)

- 왕정동 통·반의 변경

· (신설) 17통 1반 ~ 6반

· (당초) 5통 3반 → (변경) 5통 2반으로 일부 편입, 18통 1반 ~ 3반 신설, 5통 4반 → 5통 3반으로 축소 변경

3. 입법예고기간 : 2023. 10. 12. ~ 2023. 10. 31.(20일간)

4. 의견제출

가.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원시장(참조 : 행정지원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의견 제출사항

- (1)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)
- (2) 의견 제출자의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
다. 의견 제출할 곳 : (우) 55738 / 전북 남원시 시청로 60, 남원시청 행정지원과

라. 의견 제출 방법 : 서면, 전화(063-620-6069), 팩스(063-620-6704), 이메일(tmdwjd12@korea.kr), 직접방문, 남원시 홈페이지 등

5. 기 타

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행정지원과(☎063-620-6069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6. 남원시 리·통·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 : 붙임

남원시 리·통·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| | |
|----------|--|
| 의안 번호 | |
|----------|--|

제출연월일 : 2023. 10.

제 출 자 : 남 원 시 장
제안설명자 : 행정지원과
장

1. 개정이유

주민생활권과 행정구역의 일치를 위해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하여,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효율적 행정 추진에 이바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읍·면의 리·반장의 정수 및 리·반의 관할구역 조정 (안 별표 1)
 - 주생면 리·반의 변경
 - (당초) 주생면 도산리 상도 1·2반
 - (변경) 주생면 도산리 상도 1·2반, 동산 1·2반
- 나. 동의 통·반장의 정수 및 통·반의 관할구역 조정 (안 별표 2)
 - 왕정동 통·반의 변경
 - (신설) 17통 1반 ~ 6반
 - (당초) 5통 3반 → (변경) 5통 2반으로 일부 편입, 18통 1반 ~ 3반 신설, 5통 4반 → 5통 3반으로 축소 변경
 - 기타 아파트 내 상가동 추가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
- 나. 그 밖의 사항
 - 1) 입법예고
 - 기 간: 2023. 10 . . ~ 2023. 10. .(14일간)
 - 결 과:
 - 2) 비용추계서: 비 추계대상
 - 3) 규제예비심사:
 - 4) 성별영향평가:

5) 부패영향평가:

남원시 조례 제 호

남원시 리·통·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남원시 리·통·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 <개정 2016.2.12., 2019.12.11., 2020.10.19., 2021.3.26., 2022.10.19.>

남원시 읍·면의 이·반장 정수 및 이·반의 관할구역
총괄표

| 읍·면 | 리 수 | 분리수 | 이장정수 | 자연마을수 | 반 수 | 반장정수 | 비 고 |
|-------|-----|-----|------|-------|-----|------|-----|
| 계 | 157 | 344 | 344 | 438 | 693 | 693 | |
| 운 봉 읍 | 17 | 33 | 33 | 37 | 78 | 78 | |
| 주 천 면 | 11 | 23 | 23 | 30 | 41 | 41 | |
| 수 지 면 | 6 | 19 | 19 | 19 | 31 | 31 | |
| 송 동 면 | 13 | 26 | 26 | 40 | 47 | 47 | |
| 주 생 면 | 9 | 18 | 18 | 31 | 46 | 46 | |
| 금 지 면 | 11 | 20 | 20 | 25 | 51 | 51 | |
| 대 강 면 | 13 | 24 | 24 | 28 | 46 | 46 | |
| 대 산 면 | 8 | 15 | 15 | 20 | 30 | 30 | |
| 사 매 면 | 9 | 20 | 20 | 22 | 37 | 37 | |
| 덕 과 면 | 6 | 15 | 15 | 23 | 29 | 29 | |
| 보 절 면 | 9 | 25 | 25 | 30 | 40 | 40 | |
| 산 동 면 | 7 | 15 | 15 | 19 | 45 | 45 | |
| 이 백 면 | 10 | 21 | 21 | 23 | 42 | 42 | |
| 인 월 면 | 9 | 26 | 26 | 28 | 53 | 53 | |
| 아 영 면 | 11 | 26 | 26 | 28 | 38 | 38 | |
| 산 내 면 | 8 | 18 | 18 | 35 | 39 | 39 | |

| 읍면 | 리명 | 이장 정수 | 분리명 | 반 | 관 할 구 역 |
|----|----|----------|-----|---|---|
| 주생 | 도산 | 1 | 상도 | 1 | 881, 963-1~963~5, 964-1~964-11, 966-1~966-10, 산 36~ 산43, 968-1~968-6, 970-2~970-9, 975-1~975-13, 759-1~759-23, 538, 977-2, 977-5 |
| | | | | 2 | 759, 756-9, 757-20, 산79, 663-2, 709-2, 682-1, 704, 산 88-1, 산 87, 720-1 |
| | | | 동산 | 1 | 산44, 산51, 산54-1, 산55, 산56, 산57, 산76-16 산 45-1, 900, 901, 902, 969, 970-1, 970-17, 971, 972-1~972-15, 974-1~974~8, 758-1, 758-13, 758-14 |
| | | | | 2 | 757-142, 757-128, 738-3, 720-16, 720-1~720-6, 756-9, 757-7, 757-47, 757-161, 757-167, 산79-1, 산82-4 720-13~720-16 |

[별표 2]

남원시 동의 통·반장 정수 및 통·반의 관할구역

총괄표

| 행정동 | 법정동수 | 통 수 | 통장정수 | 반 수 | 반장정수 | 비 고 |
|-----|------|-----|------|-----|------|-----|
| 계 | 23 | 165 | 165 | 767 | 767 | |
| 동충동 | 1 | 13 | 13 | 61 | 61 | |
| 죽항동 | 3 | 13 | 13 | 69 | 69 | |
| 노암동 | 3 | 20 | 20 | 87 | 87 | |
| 금동 | 3 | 23 | 23 | 114 | 114 | |
| 왕정동 | 3 | 18 | 18 | 79 | 79 | |
| 향교동 | 5 | 29 | 29 | 117 | 117 | |
| 도통동 | 5 | 49 | 49 | 240 | 240 | |

(중략)

| 동 | 통 | 통장 정수 | 반 | 관 할 구 역 |
|-----|----|----------|---|--|
| 왕정동 | 5 | 1 | 1 | 32-1~32-3, 33, 34-1~34-6, 35-1, 35-2, 35-3, 36-1~36-3, 37-1, 37-3, 38, 39-4, 183-1, 183-2~183-9, 183-10~183-16, 183-17 |
| | | | 2 | 159~161, 163~170, 172~175 175-1~175-7, 176, 177-1~177-8, 177-9~177-12, 178-1~178-3, 178-4, 178-5, 179~181, 182-1~182-4, 182-5, 184-1~184-7, 185, 186-1, 187-1 |
| | | | 3 | 106~108, 109-1~109-5, 110-1, 111-1, 216-1, 218-2, 219-1~219-5, 219-6~219-9, 220-1~220-3, 221, 222, 592-15~592-21, 592-22~592-28 |
| | | | 4 | 삭제 |
| | 11 | 1 | 1 | 왕정동 92-4번지 명지아파트 1동(101~601, 102~602, 103~603, 105~605) 91-3, 91-4, 상가동 |
| | 16 | 1 | 1 | 신정동 933, 남원오투그란데퍼스트시티 102동(101~1501, 202~1502, 103~1503, 104~1504), 상가동 |
| | 17 | 1 | 1 | 남원오투그란데디아트 201동 (101~1501, 102~1502, 단지 내 상가동) |
| | | | 2 | 남원오투그란데디아트 202동 (101~1201, 102~1502, 103~1503) |
| | | | 3 | 남원오투그란데디아트 203동 (101~1201, 102~1202) |
| | | | 4 | 남원오투그란데디아트 204동 (경로당, 201~1501, 102~1502, 103~1503, 204~1204, 105~1205) |
| | | | 5 | 남원오투그란데디아트 205동 (101~1101, 102~1102) |
| | | | 6 | 남원오투그란데디아트 206동 (101~1101, 102~1102, 103~1003, 204~1004) |
| | 18 | 1 | 1 | 150-1~157-13 |
| | | | 2 | 118-1~118-15, 119-1~6, 127-5, 131-2~140-14 |
| | | | 3 | 75-1~79-11, 119-4, 120-1~141 |

붙임

관련 법령

□ 지방자치법

제7조(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·면·동 등의 명칭과 구역)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·면·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,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·면·동을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, 그 결과를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,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,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③ 인구 감소 등 행정여건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개 이상의 면을 하나의 면으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면[이하 “행정면”(行政面)이라 한다]을 따로 둘 수 있다.

④ 동·리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·리를 2개 이상의 동·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·리를 하나의 동·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(이하 “행정동”이라 한다)·리(이하 “행정리”라 한다)를 따로 둘 수 있다.

<개정 2021. 4. 20.>

⑤ 행정동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 등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. <개정 2021. 4. 20.>

⑥ 행정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. <신설 2021. 4. 20.>

남원시 리·통·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비용추계서

□ 비용추계 대상 여부
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으로 「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4항제1호 해당되어 비용추계 작성 대상이 아님.

※ 「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4항제2호

제3조(작성대상)

-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.
 -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,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.
 - ③ 「지방자치법」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.
 -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.
단, 제외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
 2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 3.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

의견제출서

| | | | |
|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1. 의견제출 목록 | | 남원시 리·통·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| |
| 2. 제출자 | 성명(명칭) | | |
| | 주 소 | | |
| 3. 의 견 | | | |
| 4. 기 타 | | | |
| <p>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(의견제출 및 처리)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0 년 월 일</p> <p>의견서 제출인 주 소 : 성 명 : (서명 또는 인) 전 화 :</p> <p>남원시장 귀하</p> | | | |
| 비 고 | 1.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. 2.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. 3.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| | |

남원시 공고 제2023 - 2025호

「남원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10월 11일

남 원 시 장

남원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1. 제정이유

시민의 정서함양과 지역문화 예술진흥 발전 및 미래의 꿈나무 청소년 예술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각기 운영되어 온 3개 예술단을 통합하고, 체계적인 설치 및 구성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에게 수준 높은 문화향유권을 제공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시립예술단 목적, 종류, 구성 및 정원 규정 (안 제1조~안 제4조)

나. 시립예술단 단원 채용, 단원 임명 및 위촉, 단원의 직무 명시

(안 제5조~안 제7조)

다. 시립예술단 단원의 급여, 명예퇴직 제도 명시 (안 제8조, 안 제9조)

라.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 설치·운영 (안 제10조)

마. 시립예술단 단원의 정기평정제도, 징계위원회, 해촉 규정

(안 제11조~안 제13조)

- 바. 시립예술단 입장료 및 출연료 규정 (안 제14조)
- 마. 시민국악 교육을 위한 국악연수원 운영 규정 (안 제15조)
- 사.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인턴단원제 운영 규정 (안 제16조)
- 아. 시립예술단 예산지원사항 규정 (안 제17조)

3. 입법예고기간 : 2023. 10. 11. ~ 10. 31. (20일간)

4. 의견제출

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·개인은 2023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원시장(참조:문화예술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 제출사항

- (1)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)
- (2) 의견 제출자의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, 전화번호

나. 의견 제출할 곳

(우) 55738 / 전북 남원시 시청로 60, 남원시청 문화예술과

다. 의견 제출방법 : 서면, 이메일(hs8744@korea.kr), 팩스(063-620-6707), 직접 방문 등

5. 기 타

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문화예술과 국악진흥팀(☎063-620-6167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6. 불 임 : 남원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부

남원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| | |
|----------|--|
| 의안 번호 | |
|----------|--|

제출연월일: 2023. 10.

제 출 자: 남 원 시 장

제안설명자: 문화예술과장

1. 제정이유

시민의 정서함양과 지역문화 예술진흥 발전 및 미래의 꿈나무 청소년 예술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각기 운영되어 온 3개 예술단을 통합하고, 체계적인 설치 및 구성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에게 수준 높은 문화향유권을 제공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시립예술단 목적, 종류, 구성 및 정원 규정 (안 제1조~안 제4조)
- 나. 시립예술단 단원 채용, 단원 임명 및 위촉, 단원의 직무 명시 (안 제5조~안 제7조)
- 다. 시립예술단 단원의 급여, 명예퇴직 제도 명시 (안 제8조, 안 제9조)
- 라.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 설치·운영 (안 제10조)
- 마. 시립예술단 단원의 정기평정제도, 징계위원회, 해촉 규정 (안 제11조~안 제13조)
- 바. 시립예술단 입장료 및 출연료 규정 (안 제14조)
- 마. 시민국악 교육을 위한 국악연수원 운영 규정 (안 제15조)
- 사.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인턴단원제 운영 규정 (안 제16조)
- 아. 시립예술단 예산지원사항 규정 (안 제17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, 「문화예술진흥법」, 「지역문화진흥법」
- 나. 그 밖의 사항
 - 1) 입법예고
 - 기 간: 2023. 10. 11. ~ 2023. 10. 31.(20일간)

- 결 과:

- 2) 비용추계서: 첨부
- 3) 규제예비심사: 완료
- 4) 성별영향평가: 완료
- 5) 부패영향평가: 완료

남원시 조례 제 호

남원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시민의 정서함양과 지역사회 문화예술의 발전 및 미래의 꿈나무 청소년 예술인재를 육성을 위하여 남원시립예술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예술단의 종류) 남원시 시립예술단(이하 “예술단”이라 한다)에는 다음 각 호의 예술단체를 둔다.

1. 남원시립국악단(이하 “국악단”이라 한다)
2. 남원시립농악단(이하 “농악단”이라 한다)
3. 남원시립합창단(이하 “합창단”이라 한다)
4. 남원시립청소년국악단(이하 “청소년국악단”이라 한다)
5. 남원시립청소년농악단(이하 “청소년농악단”이라 한다)
6. 남원시립청소년합창단(이하 “청소년합창단”이라 한다)

제3조(기능) 예술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시민의 문화예술 정서함양 및 화합
2.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전통예술교육
3. 지역 문화·예술의 진흥 및 발전
4. 지역 문화사절단 역할 및 문화예술 교류 등을 통한 남원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의 위상 제고
5. 미래의 꿈나무 청소년 예술인재 양성

제4조(구성 및 정원) ① 예술단장은 부시장이 되고, 부단장은 업무담당 과장으로 하며, 각 예술단은 예술감독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예술감독을 포함하여 총 234명 이내로 구성하며, 각 예술단의 정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국악단: 예술감독을 포함하여 51명 이내
2. 농악단: 예술감독을 포함하여 52명 이내
3. 합창단: 예술감독(지휘자)를 포함하여 45명 이내
4. 청소년국악단: 관리교사 1명과 단원 15명 이내
5. 청소년농악단: 단원 20명 이내
6. 청소년합창단: 단원 50명 이내

③ 단원은 상임단원, 비상임단원, 일반단원, 객원단원으로 구분하며,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상임단원: 매일 상근하는 주 40시간 이내 단원으로서 각 목의 예능단원과 사무단원으로 구분한다. 다만, 예술감독 등의 경우 공개채용 시 별도 계약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상임단원에 준하여 적용

가. 예능단원: 각 예술단이 공연 기획·제작하는 작품 등에 출연하는 단원

나. 사무단원: 공연 기획·제작·홍보·지원, 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단원

2. 비상임단원: 제1호 외의 단원으로 주 15시간 미만 또는 월 60시간 미만 근무하는 단원

3. 일반단원: 각 예술단의 연습 및 공연작품 등에 출연하는 주 1~2회이상 연습하는 단원

4. 객원단원: 각 예술단 공연작품의 완성도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

경우 일시적으로 공연에 출연하는 단원

- ④ 단원의 정원·직책·보수 그 밖의 단원의 실비보상금, 수당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.

제5조(채용) ① 각 예술단의 예술감독 및 단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.

- ② 공개경쟁 전형은 실기 및 면접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. 다만, 각 예술단의 예술감독과 사무국의 사무단원의 경우 실기를 제외할 수 있다.

- ③ 단원의 자격, 채용방법, 전형위원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6조(임명 및 위촉 등) ① 각 예술단의 예술감독은 시장이 임명하고, 상임단원은 예술단장이 임명하며, 그 밖의 단원은 각 예술단의 예술감독이 위촉한다.

- ② 각 예술단의 직책단원에 대한 추천, 임명, 임기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.

- ③ 각 예술단의 비상임단원 및 일반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. 다만, 위촉기간 만료 시까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위촉된 것으로 본다.

- ④ 예술감독 등 별도 계약에 따라 채용된 단원의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근무평정 또는 전형 심사를 거쳐 임명할 수 있다.

제7조(직무) ① 예술단장은 남원시장(이하 "시장" 이라 한다)의 명을 받아 사무를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·감독한다.

- ② 부단장은 예술단의 관련 사업, 예술단 간 업무조정, 그 밖의 예술단 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한다.

- ③ 각 예술단의 예술감독은 각 예술단을 대표하고, 단원의 연습과 공연을 지휘·감독 등 공연활동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.

- ④ 각 예술단의 직책단원은 예술단 운영 및 행정사무 업무, 단원의 근무 관리, 의

상·소품·악기 등 공연물 관리, 단원의 공연작품·지도의 업무를 수행한다.

⑤ 단원은 각 예술단의 예술감독의 직무명령에 따라야 하며, 부여되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.

제8조(급여 등)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, 수당, 실비보상금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9조(명예퇴직) 각 예술단의 상임단원에 대한 명예퇴직은 「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」 및 「남원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」을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.

제10조(운영위원회 등) ① 시장은 예술단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남원시립예술단운영위원회(이하 “운영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1. 예술단의 주요 운영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
2. 예술단 간 활동 및 운영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
3. 중요시책의 결정·변경·폐지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예술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

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하되,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1. 당연직: 부시장, 업무담당과장, 각 예술단의 예술감독
2. 위촉직: 남원시의회 의원, 무형문화재 보유자, 문화예술에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

③ 위원장은 예술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(互選)한다.

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총괄한다.

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
⑦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⑧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, 간사는 해당업무 팀장이 된다.

제11조(정기평정제도) 단원의 기량향상 및 근무평가를 위하여 정기평정을 실시하며, 평정시기, 평정방법, 평정에 따른 조치 등 세부적인 사항은 각 예술단별 특성에 맞게 규칙으로 정한다.

제12조(징계위원회) 단원이 각 예술단의 위신과 명예 실추 및 법령상의 의무 위반 등 예술단의 발전에 저해가 되는 단원에 대하여 징계의결하여야 하며, 징계위원회 구성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13조(해촉) 각 예술단의 비상임단원 및 일반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.

1. 정당한 사유 없이 연습·공연에 연속 3회 이상 불참하여 공연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
2. 정당한 사유 없이 연간 5회 이상 무단결근한 경우

제14조(입장료 및 출연료) ① 각 예술단의 공연 시에는 입장료 및 출연료를 징수할 수 있다. 다만,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할 수 있다.

② 입장료 및 출연료는 시의 세입으로 한다.

③ 입장료 및 출연료는 각 예술단의 공연별로 규칙으로 정한다.

제15조(국악연수원) ①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판소리, 무용, 기악 등의 국악교육 시민강좌를 국악연수원에서 운영할 수 있다.

② 국악연수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「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」에 따라 법인·단체 또는 기관에 이를 위탁·운영할 수 있다.

③ 국악교육 시민강좌 운영계획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16조(청년인턴단원제 운영) ① 단원의 결원에 대비하여 예술단의 공연작품 연마 및 실무업무 등을 주임무로 하는 청년인턴단원을 둘 수 있다.

② 청년인턴단원은 1년 이내로 운영되고 계약종료 1개월 전에 적격성평가를 통하여 상임단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.

제17조(예산지원) 시장은 예술단의 문화공연 교류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18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폐지)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「남원시립국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」, 「남원시립농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」, 「남원시립합창단 및 남원시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·운영조례」는 폐지한다.

제3조(경과규정) ① 이 조례 시행 이전에 「남원시립국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」에 따라 구성된 남원시립국악단, 「남원시립농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」에 따라

구성된 남원시립농악단, 「남원시립합창단 및 남원시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·운영조례」에 따라 구성된 남원시립합창단 및 소년소녀합창단의 단원은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남원시립예술단으로 본다.

② 이 조례 시행 이전에 「남원시립국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」에 따라 구성된 남원시립국악단 공연기획실장은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남원시립국악단 사무국장으로 보며, 「남원시립농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」에 따라 구성된 남원시립농악단 부단장은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남원시립농악단 예술감독으로 본다.

남원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

1.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

- 재정수반요인 : 시립예술단 정원 조정에 따른 예술단원보상금 발생분
- 관련조문 : 남원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4조

2. 비용 추계결과

- 비용추계의 전제 : 예술단원보상금(인건비) 단원 234명분
- 연도별 예술단원보상금(인건비) 세출 추계

(단위 : 백만원)

| 구분 | | 연도 | 2024년 | 2025년 | 2026년 | 2027년 | 2028년 | 합계 |
|-----|-----|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|
| | | 총계 | | 4,007 | 4,085 | 4,166 | 4,249 | 4,331 |
| 세출비 | 인건비 | 국악단 | 2,952 | 3,010 | 3,070 | 3,131 | 3,192 | 15,355 |
| | | 농악단 | 560 | 571 | 583 | 596 | 608 | 2,918 |
| | | 합창단 | 443 | 452 | 461 | 470 | 479 | 2,305 |
| | | 청소년예술단 | 52 | 52 | 52 | 52 | 52 | 260 |

※ 연도별 예술단원보상금 평균 인상율 2.0% 적용

3. 재원 조달 방안

- 재원조달계획 : 전액 시비 편성

4. 그 밖의 사항

- 작성자 : 문화예술과장 김경숙

<연도별 비용 추계표>

(단위 : 백만원)

| 구 분 | 1차년도 (2024년) | 2차년도 (2025년) | 3차년도 (2026년) | 4차년도 (2027년) | 5차년도 (2028년) | 계 |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
| 세 입 | 4,007 | 4,085 | 4,166 | 4,249 | 4,331 | 20,838 | |
| 지방세 | 4,002 | 4,075 | 4,146 | 4,219 | 4,291 | 20,733 | |
| 세외수입 (그외수입) | 5 | 10 | 20 | 30 | 40 | 105 | |
| 의존재원 | | | | | | | |
| 세 출 | 4,007 | 4,085 | 4,166 | 4,249 | 4,331 | 20,838 | |
| 예술단원보상금 | 4,007 | 4,085 | 4,166 | 4,249 | 4,331 | 20,838 | |
| 재원 조달 | 4,007 | 4,085 | 4,166 | 4,249 | 4,331 | 20,838 | |
| 의존 재원 | 소 계 | | | | | | |
| | 보조금 | | | | | | |
| | 지방교부세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
| 자체 수입 | 소 계 | 4,007 | 4,085 | 4,166 | 4,249 | 4,331 | 20,838 |
| | 지방세 | 4,002 | 4,075 | 4,146 | 4,219 | 4,291 | |
| | 세외수입 (그외수입) | 5 | 10 | 20 | 30 | 40 | 105 |
| | | | | | | | |
| 지방채 | | | | | | | |
| 기 금 | | | | | | | |
| 공기업 특별회계 | | | | | | | |
| 기 타 (채무부담, 민자 등) | | | | | | | |

의견제출서

| | | |
|--|---|---------------------|
| 1. 의견제출 목록 | | 남원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|
| 2. 제출자 | 성명(명칭) | |
| | 주 소 | |
| 3. 의 견 | | |
| 4. 기 타 | | |
| <p>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(의견제출 및 처리)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023년 월 일</p> <p>의견서 제출인 주 소 : 성 명 : (서명 또는 인) 전 화 :</p> <p>남원시장 귀하</p> | | |
| 비 고 | 1.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. 2.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. 3.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| |